

#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부천대장지구 A-6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블록 688세대

■공급대상: A-6블록 688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61세대 [전용면적 46m<sup>2</sup> 125세대, 55m<sup>2</sup> 336세대]

■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부천대장지구 A-6블록) 분양 상담 전화(032-323-322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자산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LH와 DL이앤씨(주)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써, 청약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하여 진행하나, 청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문의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032-323-3222)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mark>거주지역, 소득, 총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mark> 약저축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는 <mark>각각 공급신청이 불</mark>가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 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mark>예비신혼부부 제외</mark>)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융권의 증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증도금 집단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증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증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증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세내용은 26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통장(청악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악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04.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존 가입기간 및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남부터 가입기간 및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비규제지역 수도권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긴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공공택지 3년 적용 사전청약 당첨자 구분 공고 보청약 청약전수 당첨자박표 서르전스 계얀체격 청약접수 '25.05.12.(월) 10:00 ~ 05.13.(화) 17:00 '25.05.14.(수) 10:00 ~ 05.15.(목) 17:00 '25.06.26.(목) (14:00 이후) '25.07.03.(목)~07.12.(토) (10:00 ~ 16:00. 주말포함) '25.09.25.(목)~09.29.(월) (10:00 ~ 16:00, 주말포함) 일정 '25.04.30.(수)

#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블록 **688세대 중 461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2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A-6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30.(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820003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e편한세상 대장 퍼스타움 홈페이지(http://www.elif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5.05.09.(금) 10:00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5.05.05.(월) ~05.06.(화) (10:00~17:00) 2일간 사전공개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46B, 55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46A, 55B, 55C타입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
  -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대 상	구 분	방문 일정	주 소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당첨자 사전관람	'25.05.05.(월) ~ 05.06.(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일반관람 불가)	(10:00~17:00)	상동 529-49	*관람 및 상담 시
일반개방	일반관람	'25.05.09.(금) ~ 05.15.(목)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10:00~17:00)	주택전시관	문의 : ☎032-323-3222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elife.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정식 오픈: 2025.05.09.(금) 이후)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주택의 명칭은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b>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b> 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에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 및 제3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12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2025.04.30.)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 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4.04.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4.04.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 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식종서고 적차가 지핵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m\*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악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회망타유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 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한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78	7 7	청약	접수	ことがてしまして	다치지 나르저스	게야번경		
구분	공 고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4.30.(수)	'25.05.12.(월) 10:00 ~ 05.13.(화) 17:00	′25.05.14.(수)10:00 ~ 05.15.(목) 17:00	'25.06.26.(목) (14:00 이후)	'25.07.03.(목)~07.12.(토) '25.09.25.(목)~09.29.(월 (10:00 ~ 16:00, 주말포함)			
장소	다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주택전시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 청약접수 기간 중 야간에도 접수 가능 ☎ 032-323-3222							
비고	※ 서류접수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전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통하여 사전예약 후 방문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mark>의무 가입 대상입니다.</mark>** 

- 개 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 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담보	.인정비율	70%	담보인정	영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	비율 50%	6 실행시	담보인정	성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	형비율 30%	실행시
(년)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주택도시기금법」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토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 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 청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제3호)	10년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혼희망타운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화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블록
- 공급대상 : 지하 2층 ~ 지상 15층 A-6블록 12개동 총 688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면적 60㎡ 이하 461세대

# 2. 공급대상

				세다	당 주택면적	(m²)		별	발코니	공유		공급 .	공급 세대수				01-
블록	주택형	타입	공급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확장	면적	대지 면적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면적 (계)	여부	(m²)	(m²)	합계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THE PROPERTY	0		시기
					합	계					688	239	222	227	15	17	
	46 00000	46A	46.9800	20.6675	8.2126	35.5985	111.4586	확장	25.3575	41.1650	100	20	99	<b>CF</b>	15		
A CH 2	46.0000O	46B	46.9500	20.6543	8.2074	35.5758	111.3875	확장	22.5649	41.1387	190	26	99	65	15	8	′27.11월
A-6블록		55A	55.9300	24.6048	9.7772	42.3803	132.6923	확장	29.2800	49.0073					15		(예정)
	55.00000	55B	55.8500	24.5696	9.7632	42.3196	132.5024	확장	25.6610	48.9371	498	213	123	162	15	9	
		55C	55.8100	24.5520	9.7563	42.2893	132.4076	확장	29.2800	48.9021					15		

-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랫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동·호는 당첨자 주택 선정 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본청약 물랑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장기임대(행복주택)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del>공급</del>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  $\times 0.3025$  또는 m'  $\div 3.3058$ )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 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 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 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 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7년 11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배정될 예정인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 공공 주택건설사업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 금호건설㈜, 대보건설㈜, ㈜HJ중공업, 씨앤씨종합건설㈜] / 시공업체: 디엘이앤씨㈜, 금호건설㈜, 대보건설㈜, ㈜HJ중공업, 씨앤씨종합 건설㈜]입니다.



#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분양가격	계약금	중	도금	잔금	융자금	
주택형	타입	충 (구분)	E0717	(10%)	1회차(10%)	2회차(10%)		(주택도시기금)	
			총분양가	계약시	2025.12.26.	2026.10.26.	입각	두시	
		1층	405,100,000	40,510,000	40,510,000	40,510,000	228,570,000	55,000,000	
		2층	409,370,000	40,937,000	40,937,000	40,937,000	231,559,000	55,000,000	
	46A	3층	413,630,000	41,363,000	41,363,000	41,363,000	234,541,000	55,000,000	
		4층	417,900,000	41,790,000	41,790,000	41,790,000	237,530,000	55,000,000	
046.00000		5층 이상	426,430,000	42,643,000	42,643,000	42,643,000	243,501,000	55,000,000	
046.00000		1층	404,840,000	40,484,000	40,484,000	40,484,000	228,388,000	55,000,000	
		2층	409,10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231,370,000	55,000,000	
	46B	3층	413,360,000	41,336,000	41,336,000	41,336,000	234,352,000	55,000,000	
		4층	417,620,000	41,762,000	41,762,000	41,762,000	237,334,000	55,000,000	
		5층 이상	426,150,000	42,615,000	42,615,000	42,615,000	243,305,000	55,000,000	
		1층	482,270,000	48,227,000	48,227,000	48,227,000	282,589,000	55,000,000	
		2층	487,350,000	48,735,000	48,735,000	48,735,000	286,145,000	55,000,000	
	55A	3층	492,430,000	49,243,000	49,243,000	49,243,000	289,701,000	55,000,000	
		4층	497,500,000	49,750,000	49,750,000	49,750,000	293,250,000	55,000,000	
		5층 이상	507,660,000	50,766,000	50,766,000	50,766,000	300,362,000	55,000,000	
		1층	481,590,000	48,159,000	48,159,000	48,159,000	282,113,000	55,000,000	
		2층	486,660,000	48,666,000	48,666,000	48,666,000	285,662,000	55,000,000	
055.00000	55B	3층	491,730,000	49,173,000	49,173,000	49,173,000	289,211,000	55,000,000	
		4층	496,80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292,760,000	55,000,000	
		5층 이상	506,940,000	50,694,000	50,694,000	50,694,000	299,858,000	55,000,000	
		1층	481,240,000	48,124,000	48,124,000	48,124,000	281,868,000	55,000,000	
		2층	486,30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285,410,000	55,000,000	
	55C	3층	491,370,000	49,137,000	49,137,000	49,137,000	288,959,000	55,000,000	
		4층	496,430,000	49,643,000	49,643,000	49,643,000	292,501,000	55,000,000	
		5층 이상	506,570,000	50,657,000	50,657,000	50,657,000	299,599,000	5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충·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 액이 적용됩니다.
- ※ [증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충별 등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354백만원) 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시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개별 지정 된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 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46B타입과 55A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주택전시관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 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국적표기	글고니 쥑이듬ㅋ	계약 체결시	2025.12.26.	입주 시
46A	4,371,400	437,140	874,280	3,059,980
46B	4,175,600	417,560	835,120	2,922,920
55A	5,618,800	561,880	1,123,760	3,933,160
55B	5,318,500	531,850	1,063,700	3,722,950
55C	5,527,500	552,750	1,105,500	3,869,250

-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예시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시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별도품목(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별도품목(발코니 확장)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별도품목(발코니 확장)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밬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저층부 석재 적용 구간 및 시공 상세 등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 벽, 바닥, 천장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Ⅲ**)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택	설치대수	구성	제조사	판매가격	비고
	46A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삼성/LG 중 선택	3,400,000	
	46A	선택2	실내기 3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	삼성/LG 중 선택	4,950,000	
	46B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삼성/LG 중 선택	3,400,000	
	468	선택2	실내기 3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	삼성/LG 중 선택	4,950,000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삼성/LG 중 선택	3,450,000	
	55A	선택2	실내기 3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	삼성/LG 중 선택	5,000,000	※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 제품모델은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 안니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3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삼성/LG 중 선택	6,300,000	
1-8 112	55B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삼성/LG 중 선택	3,450,000	
		선택2	실내기 3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	삼성/LG 중 선택	5,000,000	
		선택3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삼성/LG 중 선택	6,300,000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삼성/LG 중 선택	3,450,000	
	55C	선택2	실내기 3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	삼성/LG 중 선택	5,000,000	
		선택3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삼성/LG 중 선택	6,300,0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Ⅱ)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시	2025.12.26.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 추가선택품목(Ⅱ)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Ι.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표)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 $(\Pi)$  비용은 추가선택품목 $(\Pi)$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유의사항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계약 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시 동 제조사의 동급이상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수준의타제조사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 에 따라 적용되고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입주 전에 안내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 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 매립 배관이 기본으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시공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 해질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대비 5도씨이내로 설정하며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바람 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주택전시관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제조사 및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l .	<b>선택품목(Ⅲ)</b> 중문 업그레이드						(FFS	리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	비고			
	- ·		46A	46B	55A	55B	55C	·			
	현관 중문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현관중문(스윙도어)	1,850,000	2,200,000	1,850,000	1,850,000	2,200,000				
현관 /중문	현관 팬트리 선반			2,200,000	500,000	300,000	380,000				
	오픈형 신발장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간접조명 +신발살균기+에어브러쉬			1,440,000	1,440,000	1,480,000				
	(CEEE/INVINITION )										
■ 거실	업그레이드				판매가격		(단역	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46A	46B	55A	55B	55C	비고			
바닥	광폭 강마루	광폭 강마루(143mm, Misty Grey)	1,440,000	1,370,000	1,620,000	1,580,000	1,680,000	※ 평형별 적용 부위 상이			
 벽	디자인 월	디자인 월(거실 창호면+아트월 맞은편+침실면 복도 )	1,000,000	950,000	950,000	950,000	950,000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욕실)	4,050,000	4,050,000				※ 디자인 원 포모			
목문	인피니티 도어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욕실2+알파룸)			5,400,000	5,400,000	5,400,000	※ 디자인 월 품목 선택시 선택가능			
	업그레이드				I		/EH	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u>• To</u>					판매가격		(27	지 . 현, 무기기지세 포함)			
	품목	구성	46A	46B	55A	55B	55C	비고			
	냉장고장	냉장고장	1,520,000	1,170,000	1,200,000	1,170,000	1,170,000	※ 미선택시 빌트인 냉장고 품목 선택불가			
	주방 상판/벽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조리대 조명	1,430,000	1,540,000	1,440,000	1,530,000	1,370,000	00=212121			
	+조리대조명	아일랜드장, 상판 MMA(콜리니차이), 상판 콘센트		1,250,000	1,300,000	1,300,000	1,300,000				
		식탁일체형 아일랜드, 상판 MMA(콜리나차이), 상판 콘센트	>	3,050,000	1,500,000	3,050,000	1,500,000	※ 주방 상판/벽 +조리대조명 품목 미선택시 선택가능			
주방		바(Bar)타입 아일랜드장, 상판 MMA(콜리나차이), 상판 콘센트	1,400,000		$\langle \rangle$			+쪼디네쪼당 품속 미선택시 선택가능			
	아일랜드장 (택1)		1,400,000	1550,000	1 620 000	4.500.000	1 520 000	※ 주방 상판/벽_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실버쉐이드), 상판 콘센트		1,550,000	1,630,000	1,590,000	1,630,000				
		식탁일체형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실버쉐이드), 상판 콘센트		3,850,000		3,850,000		※ 주방 상판/벽 +조리대조명 품목 선택시 선택가능			
		바(Bar)타입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실버쉐이드), 상판 콘센트	1,720,000								
■ 침실	업그레이드						(단역	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7.4			판매가격			ul ¬			
	품목	구성	46A	46B	55A	55B	55C	비고			
-	붙박이장	화장대형: 침실1 붙박이장+화장대	5,080,000	4,730,000	> <						
	(택1)	화장대+의류관리기형: 침실1 붙박이장+화장대+의류관리기장	5,080,000	4,730,000							
침실1	붙박이장	침실1 붙박이장			3,460,000	3,340,000	3,460,000				
	드레스룸 가구 (택1)	화장대형: 침실 1 드레스룸 붙박이장+화장대+디자인 월			4,020,000	3,970,000	4,020,000				
		회장대형+의류관리기형: 침실1 드레스룸 붙박이장			4,020,000	3,970,000	4,020,000				
		+회장대+의류관리기장+디자인 월	1 120 000	1 420 000				-			
#1412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1,420,000	1,420,000	1,420,000	1,420,000	1,420,000				
침실2	(택1)	침실2 대형 불박이장	1,950,000	1,950,000	1,900,000	1,900,000	1,950,000				
		침실2 데스크형 붙박이장	3,650,000	3,650,000	3,600,000	3,600,000	3,650,000				
■ 욕실	업그레이드						(단역	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46A	46B	55A	55B	55C	ı—			
	복합 환풍기	복합 환풍기(욕실)	600,000	600,000	1000000	100000	1000000				
욕실		복합 환풍기(욕실1+욕실2) 비데 일체형 양변기(욕실)	330,000	33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비데 일체형 양변기	비데 일체형 양변기 (욕실1+욕실2)	350,000	350,000	780,000	780,000	780,000	※ 선택시 분리형 비데 제외			
_ ==	Name			_	•						
■ 소병	업그레이드				판매가격		(단:	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46A	46B	55A	55B	55C	비고			
조명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주방, 복도, 침 실1, 침실2, 욕실)	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조첩)+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스위치+스마트홈 연당 집실1,침실2 디밍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조철) 직부등+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스마트홈 연동 욕실 매입형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2,100,000	2,100,000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주방, 복도, 침 살1, 침실2, 알파룸, 욕 살1, 욕실2)	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조절)+거실 커튼박스 간 접조명+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거실 스마트 디 스플레이스위치-스마트홈 연동 점실1,침실2,알파롱 디밍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조절) 직부등+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스마트홈 연동 욕실1,욕실2 매입형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2,600,000	2,600,000	2,600,000				



■ 다용도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古守	Т8	46A	46B	55A	55B	55C	이프	
탄성코트	탄성코트(다용도실+실외기실)	750,000	740,000	720,000	720,000	720,000	※ 다용도실, 실외기실은 도면 표기상 비확장 발코니임	

■ 빌트인 가전 업그레이드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글드한 기안 입고대어드 (단위 : 편, 구기가지제 로							1717171/11 4-0/	
	품목	제조사	구성	제품명	타입	판매가격	비고	
빌트인 -	LG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4도어)	BC4S1AA1 (G)	46A	7,450,000	※ 냉장고장 품목 선택시 선택가능	
	오브제컬렉션 SET	LG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3도어)+인출식 수납장	BC3K1AA1 (G)	46B, 55A·B·C	7,700,000		
빌트인 냉장고 (택1)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RR40C7(9/8)95AP (satin)	46A	6,400,000	※ 인출식 수납장 너비는 평형별 상이함	
(넥1)	삼성 비스포크 SET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RZ24C5(9/8)G0AP (satin)			※ 오브제, 비스포크 중 택1,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인출식 수납장	RQ34C7(9/8)45AP (satin)	46B, 55A·B·C	6,650,000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빌트	트인 식기세척기	LG	LG DIOS 식기세척기(14인용)	DIE6PT	55A·B·C	1,650,000		
	LG 디오스 광파		디오스 광파오븐	MZ385EBTA	전타입	480,000		
빌트임	인 전기오븐(택1)	삼성	비스포크 전기오븐	NQ50T8539BK	전타입	900,000	※ 아일랜드장 품목 선택시 선택가능	
		나비엔매직	매직 컨벡션 스팀오븐	EOB-5004	전타입	650,000		
	트일 인덕션	LG	LG 인덕션 3구	BEI3GQBI	전타입	1,100,000		
빌트인 전기쿡탑		삼성	삼성 인덕션 3구	NZ63B5056AK	전타입	1,070,000	※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으로 설치	
선거국급 (택1)		나비엔매직	나비엔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	ERI-7704	전타입	1,990,000	가스쿡탑으로 설치	
	하이브리드쿡탑	나비엔매직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H-3903	전타입	800,000		
의류관리기		LG	LG 스타일러(5별)	SC5MBR53	전타입	1,800,000	※ 침실1 붙박이장 (46타입), 드레스룸 가구(55타입) 품목 중 의류관리기장 포함 품목 선택시 선택가능	
	렌지후드	힘펠	디 사일런트 후드		전타입	380,000	※ 미선택시 기본제공 후드 설치	

### ■ 추가선택품목(Ⅲ)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시	별도안내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 추가선택품목(Ⅲ)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皿)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II)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추가선택품목(Ⅲ)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Ⅲ) 유의사항

- ※ 당첨자선정 시 동호는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시 동 제조사의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수준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 에 따라 적용되고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입주 전에 안내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제품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포함),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선택시 공고한 바와 같이 세트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결합가구의 구성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공고내용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설치시 해당 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구성품목의 설치위치가 좌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오븐 미선택시 해당부위는오픈 수납장으로 마감됩니다.
- ※ 스타일러(의류관리기)는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시 지정된 위치에 가구(의류관리기장)과 결합하여 설치되고, 설치위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적용 가능 타입 상이)
- ※ 디사일런트후드(렌지후드) 선택 시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디사일런트후드(렌지후드) 선택 유무와 상관 없이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붙박이가구 설치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 불박이가구 품목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 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 침실1 및 드레스룸 내 창호 커텐박스는 불박이장 품목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텐박스크기,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침실 1 붙박이장 및 기타 침실의 대형 붙박이장, 데스크형 붙박이장 품목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주방벽, 아일랜드 상판) 설치 시 분절 시공될 수 있으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주방, 복도의 다운라이트가 소형화되고 거실 직부등이 없으므로 기본형보다 평균 조도가 낮아져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 장치(릴레이)가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발코니 또는 현관 팬트리 등에 설치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일랜드장 가구에 연결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에 의해 위치 이동에 제약이 있으니, 감안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Ⅱ,Ⅲ) 계약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공통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호, 바닥재,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기구, 주 방가구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일괄 신청시 해당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 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선택은 불가합니다.)

### ■ 품목상세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 터닝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3 <sup>4</sup>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무선AP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타입	46A	46B	55A	55B	55C
- 공급금액 기본선택품목 금액	23,258,000	23,243,000	26,734,000	26,696,000	26,677,000
발코니 확장비 기본선택품목 금액	1,212,200	1,119,250	1,772,650	1,663,750	1,701,15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공급금액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에서 상기 발코니 확장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발코니 확장비로 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



릌 작성 하여야 한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 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 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입 등)의 시공이 어려움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 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이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 주지정개시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54억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을 적용)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탈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 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ш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30%	· 공고일 현재 <b>부천시 1년 이상</b>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4.30.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 거주 ('24.04.30. 전입한 경우 포함)
<b>입주자모집공고일</b> (2025.04.30.)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b>경기도 6개월이상</b>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10.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4.10.30.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 '24.04.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4.04.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부처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전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 표(2025.06.26.)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m'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m'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m²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m²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m'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표3>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①부동산 (건물+토지)	토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투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가용 건축물사가 오피스템 등이 부속투지도 투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금융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의학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장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적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편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한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8조제12호에 따른 소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대한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③기타자산	⑤를 차감한 금액이 354,000천원 이하							
④자동차		<ul>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⑤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



한됩니다)

#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	보유기준	
구분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 <del>부동</del> 산(건물+토지)			
② <del>금융</del> 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③ 기타자산	⑤를 차감한 금액이	⑤를 차감한 금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ul><li>④ 자동차</li></ul>	388,000천원 이하	421,000천원 이하	
⑤ 부채			

##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4. 소득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우선·ʕ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14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043,718	6,004,662	6,321,734	6,813,160	7,304,587	7,796,013
	(우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8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배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11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20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 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원]

[2.11.2]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6,484,781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20%	15,851,686	18,871,794	19,868,306	21,412,789	22,957,273	24,501,756



•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페이지의 ' <b>무주택세대구성원</b> '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비신혼부부	2페이지의 ' <b>혼인으로 구성될 세대</b> '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 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위 ' <b>가구원수 적용 기준</b> '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b>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b> 의 합산 소득
한부모가족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 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 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 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기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사전청약 당첨자

### ■ 신청자격

Ш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수)]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5.04.30.)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부천시 1년 이상, 경기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5.04.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05.12.(월) 10:00 ~ 2025.05.13.(화) 17:00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 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유의사항

## •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시 당첨된 블록과 주택형(개별 타입선택은 불가)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타 주택형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발코니 확장 여부
부천대장	v C F S	46	046.0000O	발코니 확장형
	A-6블록	55	055.000O	발코니 확장형

##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5.05.12.(월) ~ 2025.05.13.(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5.05.12.(월) ~ 2025.05.13.(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충별·향별 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시 당첨자발표일[2025.06.26.(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5.07.03.~2025.07.12)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본청약 당첨자 선정시 제출서류 : VI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전매제한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전매제한 관련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 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 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 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충별·향별 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부터 1년(2026.04.30.)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20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독·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및 "<표6> 출산가구 소독기준 완화"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독·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 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충별·향별 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 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 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위 : 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 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 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충별·향별 - 층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청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 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5. 입주자 선정방법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 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표8>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2) 해당 시·도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
연속 거주기간	③ 1년 미만	1	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
	④ 미거주	0	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① 24회 이상	3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 입주자저축가입 확인서 기준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가구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지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043,718	6,004,662	6,321,734	6,813,160	7,304,587	7,796,013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8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11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3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130%</b>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b>140%</b>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 공급 낙참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표9>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① 3명 이상	3	
4) 미서너지너스	② 2명	2	디이(이아) 교수
(1) 미성년자녀수 	③ 1명	1	• 태아(입양) 포함
	④ 0명	0	
	① 3년 이상	3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
(a) 디즈테기기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2) 무주택기간 	③ 1년 미만	1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④ 해당없음	0	해당없음(0점) 선택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3) 해당 시·도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     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연속 거주기간	③ 1년 미만	1	내, 애당 시역에 거구하지 않는 경우 0억 
	④ 미거주	0	주하지 않을 경우 0점
	① 24회 이상	3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 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 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V. 신청시 확인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 동호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주택우선매입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치그ㅂ도사의 쳐야하(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3. 주택소유확인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전호시 전호→ 포죄기군을 합력→ 포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첩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 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5.06.2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H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LH는 입 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3.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 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 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 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 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5.05.12.(월) ~ 2025.05.13.(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 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5.05.12.(월) ~ 2025.05.13.(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 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 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페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전 시관(☎032-323-3222)을 통해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LH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皿.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의 3단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	장소	
	사전청약 당첨자	2025.05.12.(월) 10:00 ~2025.05.13.(화) 17:00		LH 청약플러스 n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5.05.14.(수) 10:00 ~2025.05.15(목) 17:00	인터넷 신청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mark>개별 주택타입 선택 불가</mark>)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점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시관에서 청약대행접수는 불가하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청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주택전시관(☎ 032-323-3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5.05.15.(목) 오후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VI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u>www.lh.or.kr</u>)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rightarrow$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rightarrow$  [청약]  $\rightarrow$  [청약시청]  $\rightarrow$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rightarrow$  주택형 선택  $\rightarrow$  신청유형(사전청약당첨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rightarrow$  청약신청서 작성  $\rightarrow$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5.05.12.(10:00) ~ 2025.05.13.(17:00), (본청약 신청자) 2025.05.14.(10:00) ~ 2025.05.15.(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혼부부 특별공급용)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1. 추첨(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5년 06월 26일(목) 11:00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호수
  -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 032-323-3222)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VII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당첨자)		
	방문제출(10일간)	12 4 E 7 2 8	계탁세골(중염작)		
'25.06.26.(목) 14:00 이후	'25.07.03.(목) ~ 07.12.(토) 10:00~16:00	추후 일정 통보 예정	'25.09.25.(목) ~ 09.29.(월) 10:00~16: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e편한세상 (주소 : 경	생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 032-323-3222)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5.07.03~2025.07.12)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소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자센터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사전청약공고일(2021.12.29,)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자센터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ul>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li> </ul>	행정복자센터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u>필수</u>	본인 및 세대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은 전문으로 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⑦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해당자	대상자	<ul> <li>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li>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li> </ul>	행정복자센터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괸
1)	당첨자 본인 신분증	<u>필수</u>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u>필수</u>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자선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포함)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li>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li> <li>※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li> </ul>	행정복자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필수</u>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선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행정복자산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필수</u>	본인	<ul>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li> </ul>	행정복자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u> 필수</u>	본인 및 세대원	<ul> <li>※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li> <li>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li> <li>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Ī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li>※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li> <li>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li> <li>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나창약플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u> 五个	본인 및 세대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u>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u>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해당자	본인	<ul> <li>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li>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ul>	해당직
9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	본인 및 세대원	<ul> <li>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li> <li>[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li>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li> </ul>	해당병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행정복자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해당자	세대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 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자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복자센터
④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행정복지센터

#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계약체결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비용 10%, 추가선택품목(II)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제3자	① 위임장 (공고 시에 첨부된 양식)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공고 시에 첨부된 양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제3시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디엘이앤씨(주)]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침			

### ■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 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확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 세를 정부수입인지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각각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 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포함)을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하 편의 제공에 불과한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잔금과 사업주체가 대납한중도금이자를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간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 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사는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이자 발생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납부 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 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 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동시에 수융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b>주 방</b>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기 대한 아기스 전세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욕실	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장애인 장애인		기열	시각경보기(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1개소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25.09.25.~2025.09.29, 10:00~16:00)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4.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459호)로 변경 승인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3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현의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인주 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 연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함
- 지구 내에는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임대, 민간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대장·홍대선 철도노선 역사 2개소가 위치하며, 해당 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별개 사업으로 철도공사 일정에 따라 개통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며, 공사·운영 등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외 위치한 오정로, 소사로, 봉오대로, 벌말로, 경명대로 등 도로에서 소음, 빛공해,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항평가 등으로 확정된 철도시설, 도로시설, 환승시설 등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통행제한) 및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외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제영향평가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또는 설치 위치, 제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외 북측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저공비행으로 인한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외 북측 군사시설(탄약고)이 위치하여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외 서측으로 국가하천(굴포천), 지구 내·외로 소하천 4개소(여월천, 베르네천, 오쇠천, 고리울천)가 위치하며, 해당 시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관계기관 혐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외 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영구저류시설(저류지 2개소)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해영항평가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지구 외 오정물류산업단지, 지구 내 부천대장제1,2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가 위치하여 교통문제, 분진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주변 부천대장안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외 북서측 굴포하수처리장(북부수자원생태공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처리 등) 등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악취 및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특수학교, 공영차고지, 석유, 전기,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한 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내 북서측 및 남측으로 유보지가 위치하며, 유보지의 용도는 추후 결정 예정임
- 지구 내 임시송전선로 및 임시송전철탑(154kV, 19기)이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지중화 완료 이후 철거 예정('28년 이후)이나 관계기관 협의,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지구 내외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확정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청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혐오시설 유무 및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팸플릿 등에 표시된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팬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탑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 1개소가 설치,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 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팬룸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등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세대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창호 설치구간으로 가구류 및 이삿짐 이용시는 창호에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타공용면적에서 소수점이하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합니다.
- 당 아파트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각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하여, 공용부 전기공급으로 활용 계획에 있으며,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하여 빛반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전열교환기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 시 일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시 선정한 주택관리업체는 주거와 비주거의 통합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구성원 결정에 따라 별도 관리업체에 인수인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는 공동주택과 별개로 관리되어, 관리업체도 공동주택업체와 상이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공동주택과 무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발생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구조계획 상 벽체 및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 또는 벽체와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면에는 주차 배면에 기둥 또는 벽체와 간섭되어 차량 트렁크에서 수화물 반입, 반출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611, 612동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입주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에는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어 미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인근(612동과 인접)에 설치되며,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06, 612동 지상1층과 607동 지상1층, 지하1층 등 각종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해당 단지 상부층에는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후면부 좌우,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의 주차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상1층 각 동 주변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어,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휴게공간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은 아파트 전용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아파트 전용 주차장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내부에서 보행 및 차량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입시 회차 차량과 진출 차량은 아파트 진출 차로와 합류 계획 되어, 이로 인한 교통주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으로 외부에서 진입하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진입 높이 및 램프 높이를 2.7m이상으로 적용 하였고, 지하1층 통행로 중 택배차 진입구간은 2.7m를 적용하였습니다. 지하2층 주차장의 램프 진입 높이와 주차통로는 높이를 2.3m 적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통행외 주차공간 등은 2.1m 적용되어, 유효높이 이상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607동 지상1층에 키즈라운지,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606, 607동 지하1층에 커뮤니티센터 (피트니스, P.T룸, 실내골프연습장)가, 606동 지상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및 MDF, 근로자휴게실이, 612동 지상1층에 프라이빗스터디룸, 프라이빗오피스룸, 런드리라운지, 게스트하우스가, 601동 단지 인근에 키즈스테이션이, 604, 605, 606, 608, 609동 인근에는 어린이집(2층규모)이, 단지 603, 604, 605 인근에는 드포엠카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단지 배치도 및 CG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엘리베이터 수량 및 속도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구분	아파트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지상주차장		
(세대당)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0005	계	749대	20대	58대	3대	-	-
830대	1층	437대	20대	58대	3대	-	-
(1.2대)	2층	312대	-	_	-	_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58대 중 12대는 급속충전기, 46대는 콘센트형충전기로 계획되어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따라 본 아파트 설치예정 주차대수는 총830대(공동주택(지하):827대, 근린생활시설(지상):3대)로 동별로 주 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등 디 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출입구 및 외부도로 도시 및 교통 계획에 따라 설치되며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외부도로와 단지 내부의 단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은 사면 등이 설치되며,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동측으로는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가, 대지 서측으로는 공원 및 유치원, 대지 북측으로는 가로공원이, 대지 남측으로는 RC-7BL이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 분양 단지와 무관하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급속, 완속(과금형콘센트)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1층 주차장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동출입구와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용 급속12대, 완속(과금형콘센트) 46대가 되어있으며, 향후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서류의 결격, 관계 법령 위반 및 기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타인 명의로 가입, 타인의 입주자저축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상기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 및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제시된 공급금액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청약신청 또는 당첨이 무효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업 또는 당사업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첨 후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에 포함된 공동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대보건설(주), ㈜에이치제이중공업, 씨앤씨종합건설(주),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대보건설(주), ㈜에이치제이중공업, 씨앤씨 종합건설(주)]을 포함합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계약면적, 내부레이아웃 등은 향후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일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각종 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일부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 보행로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나 휀룸, 발전기실 등 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타공용면 적에서 소수점 이하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합니다.
- 단지 주변 공원, 완충녹지, 주차장 용지, 초등학교, 중학교용지, 유치원 용지 등은 본 단지와 무관하며 해당시설의 변경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차량출입구 위치 및 차로의 너비 등은 교통영향평가로 결정된 사항이며 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공고문에 명기된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고문의 제반 내용은 승인된 건축허가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충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충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레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충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일부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 상청구는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전기 인테리어 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로 인해 홈네트 워크 system 연동이 안 될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사는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며,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 본 사업의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지하1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의 시설에 사무공간 및 보관장소로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성능개선, 운영 등의 사유로 위치, 크기, 면적,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입주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생활지원센터, 키즈스테이션, 드포엠카페,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라운지,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런드리라운지, 프라이빗오피스 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등), 다함께돌봄센터 등은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반올림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식재, 시설물 등)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사용승인도면으로 변경, 법적용어 사용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계획은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마감사양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당사자의 타 현장 및 타사 현장 과의 비교를 통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흥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등)은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 주안내문과 주민공동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 리법」에 의거한 입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지자체 요구로 인해 준공 이후 추가요금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각 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원격검침 설치 시, 검침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합니다)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안하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설계변경이 공사기간 또는 준공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전용, 공용 등)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소유자의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 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Mock 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Mock up 세대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청 협의 사항 및 인가조건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사업부지 경계선 내부에 설치된 보도(대지소유 : 아파트입주민, 이용 : 공공에 이용토록 함)는 공공보행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사업부지 경계선 외부를 둘러싼 도로(보도) 등(대지소유 : 부천시)에 대해서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공공보행로에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CG에 표현된 문주는 예시이며, 문주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후 실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을 만족시키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에 따라 일부 동 옥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며, 용량에 따라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46B타입, 55A타입 주택형의 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변경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 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 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견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구류(스위치, outlet 등),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타입 등은 주택전시 관 견본세대 내 설치에 따르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아파트 계단창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이 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에 들어가는 단위세대 실명 및 세부 부속실 실명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인허가 도서상의 실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모형에 제시된 부대복리시설의 외관,형태,마감방법 및 색상은 구조안전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제작된 DA 등 설비 시설물의 규모는 기계설비 작동을 위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항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항식 피난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 복리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 또는 1층인 경우가 있으며, 최하층이 2층인 경우만 완강기가 설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 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공급금액에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건축허가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석재 메지, 도장 줄눈, 도장 색상, 난간대, 캐노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산책로, 학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녹지 및 학교 등과 연결되는 통로 및 보도 구간은 주변 현황 및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허가기관의 혐의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녹지 및 학교 등과 연결되는 통로 및 보도 구간은 주변 현황 및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도로계획 및 시설 중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로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거실 실링팬,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외부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서측에는 교육시설 및 공원, 남측에는 도로 및 공공복합용지, 북측에는 공동주택용지 및 가로공원이 계획되어 있음
- 입주시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도로시설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통행제한),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용 가설휀스,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의해 향후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접 도로의 진출입구 및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 시설물(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등은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형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부 구간에 난간,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 옹벽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 법령 또는 현장여 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원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추후 공원 입구, 공원로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 며 공근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교육시설(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함에 따라 생활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는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악취, 해충, 홍수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도로 내 전력구(154kV)가 매설될 계획으로 전자파, 전파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사업 진행에 따라 지구 내 도로는 단계별 개통 예정으로 입주 후 교통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북측으로 공원, 동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는 도시개발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지구단위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도로 인접동의 세대는 교통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심의, 인허가 기관 또는 안전이나 현장여건 등 기타의 이유로 도로의 제원, 평면 및 종단선형이 모형이나 현재의 설계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8층 이하) 및 주차장 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가칭)대장3초등학교, (가칭)대장2중학교, (가칭)대장2유치원의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학교용지 유지, 개교 시기 등은 교육청 정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경관녹지내 30m' 규모의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나, 부천시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로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사면처리 또는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옹벽, 조경석, 산석 디자인 등의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옹벽, 조경석 산석 등의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601, 604, 605, 606, 609, 612동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단지 인근 개발계획 및 예정사항은 일부변경,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 충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용검사 단계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라 소음 저감을 위해 모형이나 설계에 표현되지 아니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방음벽 미설치구간 및 단지 주변 도 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대지면적의 증감 발생 시 등기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부여건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사업승인변경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충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지반층)에는 각종 배선, 배관, 옥외송수구함, 휀, DA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조경석, 산석 등은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지상 차로는 비상차로로 소방차, 구급차를 위해 계획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 단지 내부 공용장소인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보관소,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 페, 태양광패널(예정), 옥상 배기구, 웨더스테이션, 보안등 및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 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층 PIT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5동은 지하주차장에 저수조, 펌프실이 인접하여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8, 610동은 지하주차장에 발전기실, 열교환실이 인접하여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저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접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차량전조등 및 출차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CG,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진출입로의 출차 입구가 인접해 출차 경보음에 의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CG,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 충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지상1층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식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 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의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아파트용 지하 1층, 각 주동 공용홀 출입구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저수조 및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건축허가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 야 하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 규모,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문주주변)와 부출입구(문주주변)에 위치 합니다.(2개소)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607동 지상1층에 키즈라운지,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606동 지상1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및 MDF, 근로자휴게실, 606동 지하1층에는 커뮤니



티센터 (피트니스, P.T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샤워룸)가, 612동 지상1층에 프라이빗스터디룸, 프라이빗오피스룸, 런드리라운지,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에 필요한 지상부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각 동당 1개소씩 동 부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각 근생별 1개소씩과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다목적창고는 입주 후 약 2년간 CS센터로 사용되며 기본 마감만 제공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자,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 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태양광 위치는 공동주택 지붕에 설치 예정이며, 시공 및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 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 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식재,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동 지하1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됩니다.이에 따라 특정 호수에서의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케이블트레이 설치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린생활시설의 케이블트레이의 일부분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상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삿짐 운반 도중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각 동 필로티 및 진입로 부위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저층부는 석재, 그 외 구간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되며, 향후 석재마감 범위, 석재 종류, 줄눈, 색채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 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사, 비상 전용 출입구이며,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 동선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는 606동, 607동 사이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P.T룸 등) 607동 지상1층 키즈라운지,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606동 지상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지원센터, 근로자휴게실이, 612동 지상1층에는 런드리라운지, 프라이빗오피스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멀티룸(주민회의실), 스터디룸,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상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이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공용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가요성금속외장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의 바닥 레벨은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레벨, 조경 및 토목 계획(식재, 보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옥상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모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수량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입주민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에 주차 구역 분쟁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각 동 출입구, 수경시설, 키즈스테이션, 쓰레기 처리장, 세대 창고, 주동 1층 계단실, 최상층 계단실과 주 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 합니다.
- 공용부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부 전기료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용)가 설치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 및 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부천시 및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공원,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이행, 관련법령 개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세대 수도 계량기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된 공간에 대해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하오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출입구, 창호, 주차 램프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입면 디자인 및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오수관로 일부 배출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오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1층만 접근 가능하며, 지하2층은 택배차량이 진입이 제한됩니다.
- 지하2층 주차장에는 601, 602, 611, 612동 전용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하2층 주차시 604, 609동 사이 공용계단을 통해 지하1층으로 이동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1층에 운영합니다. 설치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인접한 동(601, 602, 604, 606, 607, 608, 609, 611, 612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05, 609, 610동 부근 실외 주민운동시설이, 607동 부근 부대시설 선큰 및 출입구, 603, 604동 사이에는 드포엠카페 및 수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612동 인근에 설치되므로,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01, 602, 603, 604, 605, 608, 609, 612동 지하1층 지하2층 동주변에는 주차장 휀륨이 설치되어, 지상1층 돌출구조물의 DA가 설치되고, 작동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6동, 607동 사이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지하 주차 이용시설 제한 및 미세한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604동 609동 사이에 계획된 계단실은 비상 소방시 활용되는 계단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이동편의 요구시에는 각동 ELEV 및 부대시설 전용 ELEV를 이용하여야 함을 인지 바랍니다.
- 602, 605, 607, 609, 610, 612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용 옥외 안테나와 중계장치가, 지하주차장 지하1층 603, 606, 610동 주변 휀룸 3개소에는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에는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실로 인해 인접한 세대 미관 저해, 소음, 진동 피해, 냄새, 사행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형 및 주택전 시관내 비치된 사업승인변경도서의 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진출입 차량 소음 및 차량 경보기 소음등으로 인접세대 미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 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홈페이지, 리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폭염/한파, 전쟁,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보육·교육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의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단지 내 세대와 임대주택 세대 입주민을 포함한다.) 자녀에게 어 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



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부천시(부천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주택법」제35조 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단지의 입주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의결 절차 등을 통하여 단지 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의 운영 방안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9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간확보를 위하여 1층 일부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가정어린이집 인가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배치여건,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교육청과 재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가칭)대장3초 개교 예정일은 2028년 3월 이며, (가칭)대장3초 개교 전까지 동산초 또는 대명초에 배치 예정(최종 확정은 입주전 결정예정)이며 급당인원은 약 40명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 및 개교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관련 유의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제공), 비품(제공 안함)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 주변에는 경비실, 키즈스테이션이, 612동 지상1층에 프라이빗스터디룸, 프라이빗오피스룸, 런드리라운지, 게스트하우스가, 부출입구에는 경비실이, 606, 607 지상,지하층 주변에는 커뮤니티센터로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피트니스, P.T룸, 607동 지상1층에는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가, 606동 지상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및 MDF, 근로자휴게실이, 603, 604, 605, 606동 인근에는 어린이집(2층규모)이, 단지 603, 604, 605 인근에는 드포엠카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상부 세대에서는 부대시설 내부조명 및 외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사용에 따른 층간소음,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과 운영에 따른 기타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선큰 구역에는 냉난방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부대시설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되며, 문주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태양광 패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부대시설 내부에는 방화구획에따른 경계벽 및 방화문이 계획되어 있어, 추후 인테리어 공사 등의 사유로 변경시에는 지차체 기관의 적법한 변경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 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외부 주민운동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 등 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상부에는 새덤식재가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시설접근이 제한되며, 관리자에 의해 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인접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이행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실명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속동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준공 및 입주 후 일정기간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아파트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경우 동 당 1개소씩 계획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계획되어 단지 내 총 1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의 거리는 동별 상이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표현된 위치와 규격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된 동에는 필로티 내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펜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파고라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식재,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표현된 마감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경비실 및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옹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 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타 공용구간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 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정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각 동 옥상에 설치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에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웨더스테이션(기상측정장비)은 601동에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웨더스테이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606동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혐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602, 605, 607, 609, 610, 612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용 옥외 안테나와 중계장치가, 지하주차장 지하1층 603, 606, 610동 주변 휀룸 3개소에는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의 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 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608동 부근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마감재의 석재 설치에 의한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조건이행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계획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P.T룸,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런드리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와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식재 수종,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과 식재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아파트 옥탑은 건식(모듈러)공법이 적용되어, 지정패널 마감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시공사인 DL이앤씨 특허 기술이 반영된 무량판 구조와 PC구조(벽식 T프레임 구조)가 같이 계획하여 해당 구조는 육안상 다르게 보여지고, 마감됩니다.
- 지하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당사자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뿜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 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 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단지배치 유의사항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 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충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 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모형 및 주택전시관내 비치된 사업승인변경도서(2025.03.06.)에서 위치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601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2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3동 북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4동 남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 북측에 어린이놀이터와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5동 남측에 휴게정원,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6동 서측에 유아놀이터,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동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7동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동측과 남측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8동 서측에 수경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측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09동 북측에 수경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동측에 유아놀이터, 남측에 수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10동 남측에 수경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11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612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드포엠카페,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P.T룸 등), 근린생활시설, 지하펌프실,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606, 607, 612동 주변(부대시설 옥상, 측벽, PIT, 썬큰 등)에는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605, 608, 610동 지하층 주변에는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변경도서상 단지내 레벨차에따라 계획된 계단 및 옹벽(산석, 산벽, 조경석 등 포함) 등의 단차시설물 사항은 레벨현황에 맞게 삭제 또는 축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보관소, DA(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부 레벨차로 내외부의 보행 및 차량, 비상차로 연결동선 일부는 경사로 및 계단으로 연결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통로는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외부인원의 통 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심의 인·허가 조건 이행,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옹벽 형식, 소단계획 및 조경계획 등이 변경되어 모형이나 현재의 설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지형 단차구간에 생울타리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연결송수구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열린 단지로 계획되어 출입제한을 위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동별 유의사항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 및 단지배치도 등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603, 604동 사이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드포엠카페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키즈스테이션이 각각 설치 예정이오니 모형과 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605, 607, 608, 610동 지하층 인근에는 펌프실/저수조/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1, 604, 605, 609, 612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램프가 계획되어있어 차량 진/출입시 조명/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 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611, 612동 사이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업종이나 실외기로 인하여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605, 608, 610동 1층에 인접하여 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계획되어, 점검/가동시의 연기가 발생합니다.
- 606, 607, 612동은 지하, 지상 커뮤니티센터가 인접하므로 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및 주차 이용성 불편 등의 발생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통학에 이용되는 보행로 주변 저층부 세대는 주민의 보행로 사용으로 환경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세대 인근에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및 일부 층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저층부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주동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601, 605, 606, 612동은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인근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일부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각 동 지상1층 로비(또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환기 및 보조냉방을 위한 복합환기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되며, 일부 커튼월룩 설치구간에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층변화세대 및 최상층의 공용 PD 및 AV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요금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등 옥상 관리 여부에 따라 난간이 설치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604, 605, 606, 608, 609 인근에 어린이집, 612동 지상1층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런드리라운지, 프라이빗오피스룸, 606동 지상1층 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재실 및 MDF, 근로자휴게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상 관리 여부에 따라 난간이 설치 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608동과 610동 사이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ELEV.홀 내부의 EPS/TPS, 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모듈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을 제외하고,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및 최상층세대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과 지상 일부공간 등에는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설치됩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적용 구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을 임의로 전유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옥상에는 통기관이 노출 시공되며,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는 인접세대로 피난을 위한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필로티 세대의 최하층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 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충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거실, 침실, 주방/식당 공간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충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 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장식 커튼월 입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욕실화와 욕실 도어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지 배치도 및 기타 분양흥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항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내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개폐방향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타입 선택 시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의 위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 가구의 위치를 임의로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및 마루 미시공면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충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정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세탁실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LG 오브제,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 건조기 규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세탁기/건조기는 수평배치 가능하도록 적용되었으나 규격 외 대형 제품설치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배치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2단 적층시 사전에 공간확인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홈서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디퓨져,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실측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 매립 배관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됩니다. 입주 후 천장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 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점이 냉매배관 착수 시점 이후인 경우, 공정상의 이유로 시스템 에어컨 브랜드 선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설치 및 시공되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별 입주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전용 앱을 통하여 세대 내 기기 제어(조명, 난방 등)가 가능하며, 월패드와 연결되는 세대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됩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 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씽크대의 수전 및 하수구 위치는 미러형 세대 미러하여 설치되지 않으며, 전세대 우측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침실 내 도어 후면, 신발장, 드레스룸 등 벽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u>- 주방TV, 전동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추가 설치 요구할 수 없습니다.</u>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 습니다
- 아트월 및 복도 패널 마감의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벽 판넬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등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세라믹패널의 이음매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벽의 마감재는 제조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몰딩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치수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 장치는 도어면 외부로 돌출될 수 있으며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정, 벽, 바닥 등의 내부 마감은 시공성 개선에 따라 실시공 시 마감 상세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비확장발코니의 천정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현관, 신발장,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 덕트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전등 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바닥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 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면한 발코니 벽체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과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됩니다.(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완강기 설치세대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발코니가 연결 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서비스 면적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현재 전세대 확장형으로 공사 예정으로 향후 공사일정 등의 이유로 인해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개폐방향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 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페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 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패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 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되는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욕조의 경우 본 공사 시 제조사, 디자인 및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 및 도기질, 자기질 타일, 패널형 마감재 등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



#### 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적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엔지니어스톤,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 철이 발생할 수 있고, 마감재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무늬,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패널형 마감재는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 및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카달로그 등 홍보물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움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비확장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현관팬트리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수전류,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주방가구 후드장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수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이질재 접합부의 코킹(실리콘)은 주택전시관과 동일하게 시공예정입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유의사항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무근 콘크리트 설치시, Saw Cutting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는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급배기 루버 설치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휀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구획별로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유효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 주차장은 전통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 위치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급배기용 휀과 주차면이 간섭되어 바람에 의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및 층차이 부분 옥상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 세대내 진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방식은 입주자회의로 결정에 따릅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은 예시이며, 문주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획 및 대수 산정은 법규 및 각종 심의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사업당사자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시스템(홈네트워크, 주차유도, 원격검침, 커뮤니티 예약 외)은 e편한세상 스마트홈 서비스에 최적화 설계되어있으므로, 사전협의 없는 변경 및 추가행위는 정상 서비스



#### 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601, 602, 603, 604, 605, 608, 609, 612동 지하1층 지하2층 동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훼품이 설치되어 이로인한, 작동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블럭벽체가 구획되어있어, 일부 주차구획구간은 승하차시 공간 미확보로 인한 불편 및 주변 차량주행시 시야확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 저수조 설치 예정이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펌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RC,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각 동의 세대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우오수 맨홀이나 집수정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조업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서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커뮤니티센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 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것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 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분양자"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이에 반하여 "분양자", "시공사" 등 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수분양자"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 명칭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ㆍ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 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하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 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시설물의 위치, 구조, 색채 및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 결과와 지반 현황 및 각종 평가, 유관 기관의 심의 결과,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 마감이 없으며(천장 단열 노출) 별도의 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 및 트렌치 부위에 차량 통과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공오차 발생으로 팸플릿과 모델하우스의 각 부위 치수는 본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품절, 품귀,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는 주택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팸플릿, 건본주택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니 먼저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변경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신청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마감재(출입문, 손잡이 등)는 팸플릿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입주자 부담 공사로 인한 하자 및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자 부담 공사로 인해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 제외품목 (소방관 련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결로 저감재는 외부와 직접 면한 부위에만 시공되고 부착 폭(두께)만큼 발코니 면적이 감소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비생활 공간으로 결로 저감재가 설치되지 않고 수성페인트 마감 처리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커튼박스 깊이, 길이, 단부 여장이 각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1층 및 지하층) 바닥의 경우 미끄럼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석재(혼드)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향후 차별화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옥탑, 지층, 측벽, 입면 등(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발코니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 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창호의 규격이 작아 실외기 반입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창짝 탈형이 불가능한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 가피하게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고,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상부장은 높이가 높아 개폐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장의 폭은 세대 타입별로 (평면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옵션선택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로 시공됩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욕실 등의 바닥 단차는 견본주택에 시공된 기준과 달리 현장 여건 및 시공과정, 자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로 길이가 상이합니다.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 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 입상관 주변의 발코니 천장 마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공사용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 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도에 시공 및 표현된 줄눈(타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때 등 기류에 의해 들썩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팸 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내 다용도실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 선반 활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옵션제가 적용되어 옵션을 유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옵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외부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동일 타입이라도 동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플로링보드, 주방가구, 금속제창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합니다.
- 타일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붙박이 마감재(옵션 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하고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주방 아일랜드 식탁은 하부 마감이 없으며 고정하여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 디딤석(마루귀틀) 및 주방 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이 발생합니다.
- 욕조,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변형 벽체(건식 고정 벽체)는 일반 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 성능 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칫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과바닥 페트리 용실 주방 발코니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 및 죽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각 실사이 문하부 부위 등의 륨카펫, 플로링보드 이음 시공부위는 자재 특성 상 미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과정에서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Mock 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Mock up 세대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인도합니다.
- 실 출입문에는 손끼임방지 자재가 부착됩니다.(단, 다용도실, 실외기실 출입문은 제외)
- 소방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급기구가 각 동 외벽에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용 유니트와 덕트는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설치됩니다.(알파룸, 팬트리 등에는 배기 디퓨저만 설치)
- 세대 내 실내환기설비는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로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벽면과 바닥으로 에어컨 냉매배관 및 배수배관이 노출됩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 벽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으로 인해 주방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쿡탑 추가선택품목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싱크배수구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구획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악세사리(조리기구 걸이대, 컵 선반 등)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 및 PIT층,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팬 작동 시 냄새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하므로 댐퍼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세대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계절창고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필로티 상부 세대(2층), 606, 607, 612동 일부 부대시설 상부 세대(2층) 및 저층부(2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층 이상 세대(완강기 설치세대는 제외-상부에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가 노출됨)실외기실에는 아래 세대로 탈출 가능한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가 시공될 예정이므로 계약 시 반 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부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물건을 적재하거 나 시설묵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거실, 욕실, 주방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부분에 타일 나누기 줄눈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 소방시설물은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유치원	유2	대장2유	'28.03월
초등학교	초3	대장3초	'28.03월
중학교	중2	대장2중	'30.03월
고등학교	고1	대장1고	미정

-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대장3초'로 배치 예정이며, '대장3초' 신설(개교) 전까지 인근 학교(동산초)에 임시 배치되고 학생배정 정책 및 여건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음
- ※ 중학교 학교군은 '오정·역곡중학군'이며, 해당 중학군에 9개교가 있고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배정 지침"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중학군이 변경될 수 있음
- ※ 부천은 평준화지역 단일학군(교육감 전형)으로 고등학교 배정시 학교와의 거리가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방식으로 관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 공동주택 인근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유치원) 용지가 있지만 신설 학교(유치원) 개교(개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교육부(교육지원청)의 학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용지는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지구 내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유치원) 설립 여부 및 개교시기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상황, 분양률 및 입주시기, 학교신설 교부금 예산확보 시기, 공사일정, 학생배치 여건, 학생배 치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 통학구역 및 학군의 경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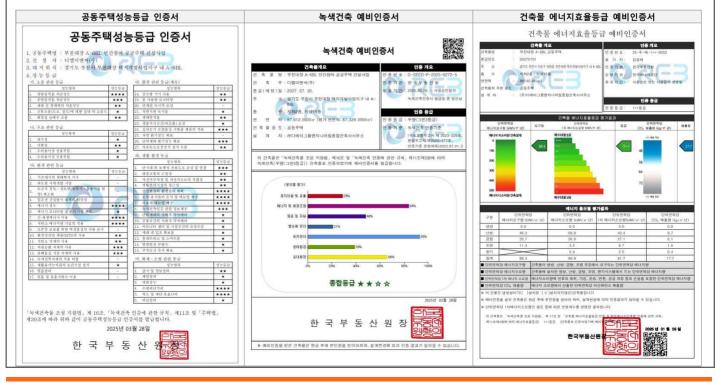
■「주택법」제3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험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소음 관련 등급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내구성	*
	가변성	**
구조 관련 등급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대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의 절토·성토량(땅깍기·흙쌓기를 위한)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재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환경 관련 등급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생활 환경 등급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방범안전 콘텐츠	*
	주차공간 추가 확보	*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수평피난거리	***
	목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imes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참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총 액		
			택지공급가격	106,919,822
택지비			기간이자	6,035,522
			필요적 경비	94,179
			그 밖의 비용	5,501,622
			계	118,551,145
1			토공사	2,996,086
1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1			옹벽공사	-
1			석축공사	-
1			우·오수공사	851,469
1		토목	공동구공사	<u>-</u>
		포국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u>-</u>
1			도로포장공사	618,194
1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14,447
1			정화조시설공사	-
1			조경공사	1,773,193
			부대시설공사	333,408
			계	6,686,797
1			공통가설공사	2,877,351
1			가시설물공사	1,294,474
1			지정 및 기초공사	1,891,527
1			철골공사	
-1	<b>-</b>		철근콘크리트 공사	21,308,323
건축비	공사비		용접공사	-
1			조적공사	885,902
1			미장공사	1,714,071
1			단열공사	1,347,228
1			방수·방습공사	831,250
1			목공사	292,858
1			가구공사	1,261,213
1		건축	금속공사	1,501,493
			지붕 및 홈통공사	847,078
1			창호공사	2,785,097
1			유리공사	80,623
1			타일공사	526,590
1			돌공사	1,719,001
,			도장공사	712,636
			도배공사	396,824
,			수장공사	4,894,370
1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622,052
			Ä	47,789,962



	총 액		
		급수설비공사	898,800
		급탕설비공사	898,800
		오배수설비공사	509,320
		위생기구설비공사	827,068
	기계서비	난방설비공사	1,002,521
	기계설비	가스설비공사	299,600
		자동제어설비공사	299,600
		특수설비공사	1,438,447
		공조설비공사	509,320
		Й	6,683,474
		전기설비공사	7,269,779
		정보통신공사	3,559,407
	그 밖의 공종	소방설비공사	3,341,092
		승강기공사	2,202,258
		계	16,372,535
		일반관리비	8,098,661
	그 밖의 공사비	이윤	2,844,822
		계	10,943,483
		설계비	1,935,450
		감리비	-
		일반분양시설 경비	1,995,316
	간접비	분담금 및 부담금	-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64,359
		계	4,295,125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1,084,809
	합계		222,407,330

#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라인감정평가법인		
121,089,641천원	121,629,738천원	120,549,545천원		

# 9.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Ē	백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					
항목							NA+1 DESE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따른 추가건설 산비 지: 주차		1104401
복	계	기간 이자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계	법정소파 복리시설 설치비용	법정초과 공동주택 국리시설 성능등급 설치비용 가산비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초고속 통신	기계 환기 설비	구택인 설 추가비 용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기타비용	지하 주차장 층고증 가 추가비 용	사업승인 부가조건 가산비
금액	13,172,793	6,835,395	2,060,446	4,170,292	106,660	12,553,851	1,506,015	-	3,468,113	1,211,277	1,393,455	1,483,892	1,171,534	142,749	225,394	540,128	1,411,294

#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대장 A-6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129-82-10595) DL이앤씨(주)(676-87-01904) 금호건설(주)(104-81-31309) 대보건설(주)(313-81-02806) ㈜에이치제이중공업(602-81-42993) 씨앤씨종합건설(주)(123-81-56539)	DL이앤씨(주)(676-87-01904) 금호건설(주)(104-81-31309) 대보건설(주)(313-81-02806) ㈜에이치제이중공업(602-81-42993) 씨앤씨종합건설(주)(123-81-5653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명성하나엔지니어링 주식회사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1.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